

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이유서

의안번호

177

제출년월일 : 1993. 5. 17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 정 이 유

우리구의 행정동 중 구평동사의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○ 조례(별표)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표 중 구평동사무소의 위치 “구평동 207”를 “구평동 232”로 개정함.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
-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